

퇴직급여

퇴직급여제도란?

- 퇴직급여제도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 퇴직 후 연금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 - ※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(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)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(출산전후휴가기간, 육아휴직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)
-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.
-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퇴직급여제도는 **퇴직금제도** 및 **확정급여형(DB)퇴직연금제도, 확정기여형(DC)퇴직연금제도**가 등이 있습니다.

퇴직금제도

-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.
- 근로자가 긴급한 생활자금 수요 등 일정 사유에 따라 요구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. (퇴직금 중간정산)

※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

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-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- 근로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- 근로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

▶ 유의사항

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므로,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시행(12.7.26)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.

퇴직연금제도

1. 확정급여형(DB형)퇴직연금제도

- 근로자가 받을 급여(퇴직금과 동일,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)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.
-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하며, 퇴직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합니다. (회사의 적립금 적립 비율 매년 체크 필요.)

· 수급요건

- ① 연금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.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② 일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.

· 지급방법

- ①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가입자(근로자)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.(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는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습니다.)
- ② 가입자(근로자)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(은행, 보험회사등)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며,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.

2. 확정기여형(DC형)퇴직연금제도

-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(연간 임금총액의 1/12)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.
-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.
-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.

· 특징

- ① 사용자의 부담금은 100% 사외에 예치되기 때문에 수급권 보장이 뛰어나고 퇴직시 가입자 스스로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② 확정기여형(DC형)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③ 확정기여형(DC형)퇴직연금의 가입자(근로자)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,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④ 가입자(근로자)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(IRP)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
• **수급요건**

- ①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.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②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.

• **지급방법**

- ①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가입자(근로자)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.(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는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습니다.)
 - ② 가입자(근로자)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(은행, 보험회사등)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며,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.
- ※ 확정기여형(DC형)에 가입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.

3.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

·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·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써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.

• **수급요건**

- ① 연금 : 55세 이상인 가입자(근로자)에게 지급,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② 일시금 :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.

• **특징**

- ① 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, 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
- ② 이직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, 자영업자 및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도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, 연간 1,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
- ③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IRP특례 인정

※ 전직시 퇴직연금의 이전

- 확정급여형(DB)퇴직연금제도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가능합니다.
- 확정기여형(DC)퇴직연금제도는 새로운 회사의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가능합니다.

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및 운용 구조



Q&A

- Q.** 구인광고를 냈는데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인수인계를 못해주고 그만두게 되었는데, 사장님이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. 꼭 채운 3년을 일했는데....인수인계를 못해준 잘못이 있으니 억울해도 퇴직금은 포기해야 할까요?
- A.**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 즉,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퇴직이라는 요건 이외에 다른 조건을 달아 퇴직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.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(고소)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Q.** 1년간 일하다가 회사를 그만 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사장님이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줄 수 없다고 합니다.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었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?
- A.**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진 사유(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) 이외의 경우에는, 사용자가 임의로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은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
해 주세요.

벌칙

-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사용자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확정급여형(DB)퇴직연금규약, 확정기여형(DC)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용자 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근거 조문

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(정의), 제4조(퇴직급여제도의 설정), 제8조(퇴직금제도의 설정 등), 제13조(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), 제15조(급여수준), 제17조(급여 종류 및 지급요건 등), 제19조(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), 제20조(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), 제21조(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), 제24조(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), 제25조(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)
-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), 제9조(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), 제17조(개인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납입한도), 제18조(개인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지급요건 및 중도인출)